





보도자료



보도 2016.11.3.(목) 조간 배포 2016.11.2.(수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사 무 관 전 동 연(02-2100-2614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(02-3145-8020)		은행제도팀장 김 용 태(02-3145-8030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윤 창 의(02-3145-6770)		저축은행총괄팀장 이 길 성(02-3145-6772)

제 목: P2P 대출,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- 'P2P 대출 가이드라인' 제정 방안 발표 -

- 투자 한도의 설정,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
- ◆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연계 금융회사 [대부업체, 은행· 저축은행 등]를 통해 관리·감독
- 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 업체의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
- →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
-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, 더욱이 P2P 대출을 통한 자금운용은 어떠한 보장없이 투자자의 손익으로 귀속되므로 투자자들은 **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**

1 추진배경

- □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^{*}를 보임에 따라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
 - * 대출잔액(억원) : ('15.12) 235 → ('16.3) 724 → ('16.6) 1,129 → ('16.9) 2,087

- o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,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*가 발생(미국, 중국)
 - * (美) 'Lending Club'은 '16.5월 2,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을 중개 (中) 'e쭈바오'는 '15.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
- □ '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'('16.7.1일)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*에 대해 논의하고, 'P2P 대출 가이드라인'을 제정하기로 결정
 - * 1 현행 유지 2 크라우드펀딩에 포섭, 3 별도 법률제정, 4 가이드라인 제정
- **P2P 대출 T/F***를 구성하여 **가이드라인 마련**을 위한 심충적· 다각적 논의를 진행('16.7.22일~'16.10.27일)
 - * 금융위 사무처장(팀장), 금감원·금융연·자본연·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,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·법조계 전문가
 - 최근 머니옥션 사례* 등으로 인해 국회·언론 등에서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(개인)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
 - *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지연
- ➡ 同 가이드라인의 제정 방안을 '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'에 상정('16.11.2일)하여 논의 후 확정

2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

- ①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·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
- 투자 한도 설정,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, P2P 업체(플랫폼)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
- ② 투자자의 경우,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*를 마련
 - * 투자한도 금액 설정시, ① 일반 개인, ② 일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, ③ 법인·전문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

- ③ P2P 업체(플랫폼)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·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
- 4 그 밖에 영업 또는 광고시 중립적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
- ② P2P 업체(플랫폼)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연계 금융회사(대부 업체, 은행·저축은행 등)를 통해 모니터링
- ① 감독당국은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
- ②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·감독을 위해 관계 법령(대부업법 시행령 등) 개정 등을 추진

3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- ① (투자한도)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,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 설정
-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* 기준으로, 동일 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,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
- * P2P 대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(한국예탁 결제원)이 없으므로 1개 업체별 관리로 한정
- 소득요건*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, 동일차입자 2천만원,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
 - * 1 이자·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2 사업·근로소득 1억원 초과
- **법인투자자** 및 **전문투자자***(개인)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**별도의 투자한도 없음**
 - * ①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, ②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③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
- ② (투자금의 분리 관리)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여, 사기·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
-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
- **투자자의 투자금**을 은행 등 **공신력이 있는 기관**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**예치·신탁**
- ③ (투자자 제공 정보)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토록 규정하고,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
- 차입자 신용도, 자산·부채 현황, 소득·직장 정보, 연체기록, 대출목적 및 상황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
- 특히,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^{*},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(감정평가서,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) **강화**
 - * 정보공시를 통해 P2P 업체 자율적으로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
- 아울러, P2P 업체의 거래구조, 누적 대출액, 대출잔액,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(매월)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
 - * '한국P2P금융협회'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P2P 업체 정보(대출잔액, 연체율 등)를 비교공시할 예정
- ④ (차입자 제공 정보)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,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(대출이자·수수료 등)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
 - *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리 상한규제의 우회 방지 가능
- 아울러, 차입자에게 **상환방식**, **연체이자 및 추심절차** 등에 대해 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**플랫폼에 정보 공시**
- ⑤ (영업행위 준수사항)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 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
 - *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(리스크 부담 없음)이나, 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 - ** [사례]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

4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

- □ P2P 업체(플랫폼)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금융회사(대부업체, 은행·저축은행 등)를 금감원이 검사·감독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
- (은행·저축은행 연계형) P2P 업체(플랫폼)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·부대업무 제항
- (대부업체 연계형)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^{*} 조치
 - * '<u>대부업법 시행령 개정</u>'을 통해 P2P 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'<u>금융위</u> 등록' 대상으로 규정(→금융당국의 감독대상)
- 아울러,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에 한해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(시행령 개정 필요)

5 투자자 유의 사항

- □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이용시 상당한 주의 필요
- □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,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

6 향후 계획

- ① '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'하되,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 정비^{*}를 위한 '유예기간'(3개월)을 부여
 - *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.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
- ②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 요청(행자부·지자체 협업)
- ③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,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'대부업법 시행령 개정' 추진('16.12월 중 입법예고 목표)
- 4 P2P 대출시장 전반('16.9월 기준 약 80개 추정)에 대해 '실태조사' 실시('16.11~12월말)
- < 별첨 >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